

구미시청및읍면동사무소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

구 미 시

구미시청및읍면동사무소소재지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
----------	--

제출연월일 : 2018. . .

제 출 자 : 구 미 시 장

1. 제안이유

상위 법령인 「지방자치법」 및 「도로명주소법」에 따라 읍면동의 사무소 소재지에 대한 내용 등을 정비하여 상위 법령과의 통일성을 도모하고, 행정 업무의 효율성을 증대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가. 조례명 개정

- 현행 : 구미시청및읍면동사무소소재지에 관한조례
- 개정 : 구미시청 및 읍면동의 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

나. 상위 법령인 「지방자치법」에 맞게 조문 정비

- 현행 : 읍면동사무소소재지
- 개정 : 읍면동의 사무소 소재지

다. 사무소 소재지의 주소를 도로명주소로 변경(안 별표)

3. 조례안 : 붙임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지방자치법」, 「도로명주소법」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감사담당관, 기획예산담당관과 합의되었음

라. 기 타 : 신·구조문대비표(붙임)

구미시청및읍면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구미시청및읍면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명 “구미시청및읍면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”를 “구미시청 및 읍면
동의 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”로 한다.

제1조 중 “지방자치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”를 “「지방자치법」 제6
조에 따라”로, “읍·면 동사무소”를 “읍·면·동의 사무소”로 한다.

제2조 중 “송정동 50번지”를 “송정대로 55(송정동)”로, “읍·면·동사무
소의 소재지는 “별표””를 “읍·면·동의 사무소 소재지는 별표”로 한다.

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다른 조례 또는 규칙과의 관계)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 또는
규칙에서 종전의 「구미시청및읍면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」 또는
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
종전의 「구미시청및읍면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」 또는 그 규정을
갈음하여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u>구미시청및읍면동사무소소재지에</u> <u>관한조례</u>	<u>구미시청 및 읍면동의 사무소</u> <u>소재지에 관한 조례</u>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<u>지방자치</u> <u>법 제6조의</u> 규정에 의하여 구미 <u>시청 및 읍·면 동사무소</u> 소재 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 적으로 한다.	제1조(목적) ----- 「 <u>지방자</u> <u>치법</u> 」 제6조에 따라 ----- ----- <u>읍·면·동의 사무소</u> -- ----- -----
제2조(소재지) 구미시청 소재지는 <u>경상북도 구미시 송정동 50번지</u> 에 두며, 각 <u>읍·면·동사무소</u> <u>의 소재지는 “별표”와 같다.</u>	제2조(소재지) ----- ----- <u>송정대로 55(송</u> <u>정동)</u> ----- <u>읍·면·동의 사무</u> <u>소 소재지는 별표</u> -----

[별표]

읍·면·동의 사무소 소재지(제2조 관련)

읍·면·동	소 재 지
선 산 읍	경상북도 구미시 선산읍 선산중앙로 71-1
고 아 읍	경상북도 구미시 고아읍 선산대로 980
무 을 면	경상북도 구미시 무을면 상무로 981
옥 성 면	경상북도 구미시 옥성면 주아령로 415
도 개 면	경상북도 구미시 도개면 도안로 103
해 평 면	경상북도 구미시 해평면 강동로 1672
산 동 면	경상북도 구미시 산동면 강동로 1038-5
장 천 면	경상북도 구미시 장천면 강동로 184
송 정 동	경상북도 구미시 송원동로 10(송정동)
원 평 1 동	경상북도 구미시 구미중앙로25길 20(원평동)
원 평 2 동	경상북도 구미시 구미중앙로 24(원평동)
지 산 동	경상북도 구미시 선산대로 105(지산동)
도 량 동	경상북도 구미시 문장로12길 1(도량동)
선주원남동	경상북도 구미시 봉곡로 42(봉곡동)
형 곡 1 동	경상북도 구미시 경은로 52(형곡동)
형 곡 2 동	경상북도 구미시 형곡로 180(형곡동)
신 평 1 동	경상북도 구미시 칠성로 32(신평동)
신 평 2 동	경상북도 구미시 신비로7길 9(신평동)
비 산 동	경상북도 구미시 신비로 177-3(비산동)
공 단 1 동	경상북도 구미시 비산로 4(공단동)
공 단 2 동	경상북도 구미시 1공단로 198-8(공단동)
광 평 동	경상북도 구미시 광평길 55(광평동)
상모사곡동	경상북도 구미시 상사서로 199(사곡동)
임 오 동	경상북도 구미시 임은길 61(임은동)
인 동 동	경상북도 구미시 인동15길 42(인의동)
진 미 동	경상북도 구미시 이계북로 149(진평동)
양 포 동	경상북도 구미시 산호대로35길 6(옥계동)

관계법령

□ 「지방자치법」

제6조(사무소의 소재지) ①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소의 소재지와 자치구가 아닌 구 및 읍·면·동의 사무소의 소재지는 종전과 같이 하고, 이를 변경하거나 새로 설정하려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 이 경우 면·동은 제4조의2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행정면(行政面)·행정동(行政洞)을 말한다.

② 생략

□ 「도로명주소법」

제21조(도로명주소의 사용 의무)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법인 등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도로명주소를 표시하거나 사용하여야 한다. 다만, 도로명주소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1. ~ 2. 생략

3. 공공기관 주소의 위치표시

4. ~ 7. 생략

소관 실 · 과		총 무 과
입 안 자	과 장	문 창 균
	담 당	김 진 오
	담 당 자	석 병 훈 (480-6764)